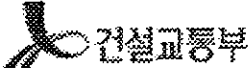


이 자료는 用 사업조건시기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보도 자료 MOCT News Release www.moct.go.kr	부 서	물류산업과
		과 장	고 칠 진
	서기관 2110-8118, 507-1630	어 명 소 UMS@moct.go.kr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 발표

- 화물시장 수급불균형 조기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 지원 등 -

□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낙후된 화물운송산업을 육성하고 선진화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조기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등 단기·중장기대책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5월 10일 발표하였음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급초과 상태인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해

- 2005년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는 등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 차고지, 자본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을 촉진하여 시장을 조기 안정화함

둘째, 貨物車主의 근로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 화물운송료가 적정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품목(컨테이너, BCT 등)에 대해서는

구간별(예, 컨테이너:부산-서울, 부산-구미, BCT:제천-서울 등)로 운송원가를 조사·발표(참고운임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함

- 또한, 고속도로 주변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금년말까지 9개소로 확충('03년 6개소)하고, 부산항·광양항·인천항 등 주요항만 주변에도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설치함

셋째, 화물운송시장구조를 선진화·투명화하기 위하여

- 다단계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 Paper company, 다단계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운송·주선업체 등에 대해

총리실·법무부·건교부·국세청·공정위·지자체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무허가 주선행위,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행위 및 장기 어음 지급 등 불법·불공정 다단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임

※ 5월중 제1차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예정

- 거래단계 축소를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 제도 및 화물운송정보망을 활성화하며

지입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화물운송업(5톤이상, 특수차)에도 차량 1대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허가제를 금년 12.31부터 시행함

- 운송업체와 차주간 발생하는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화물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며

우수 운송업체의 육성을 위해 운송실적,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여 화물차량의 증차(增車)시 우대를 추진함

넷째,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자격제도」를 금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지부별 독립채산제방식에서 전국채산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조합의 투명한 경영 유도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토록 함
- 또한,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불법 주차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를 적극 확충하여 나가기로 함

다섯째, 화물운송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 화물운임, 물동량 등 시장상황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시장변화나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 화물차 안전사고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은 속도제한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 추진함
 - 집단운송거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한데 이어, 정부종합대응 매뉴얼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운영함
- ☐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육성대책에 대한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 참고로, 지난해 5월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정부가 약속한 11개 사항중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9개 사항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음

- 2개 추진 사항중 “노동권 보장”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설치('03.9.3) 하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산재보험 가입” 사항은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시행령을 개정중(법제처 심사중)에 있음

붙임 : 1.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요약)
2. '03년 화물운송개선 11개사항 추진사항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요약)

2004. 5

건 설 교 통 부

1. 화물운송산업의 현주소

◇ 규제완화로 인한 차량의 과잉공급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

- '97~'02년간 화물차 64.9%증가, 물동량 17% 증가

◇ 화물차주는 경유가 인상·물량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이 악화

구 분	'97	'02	증감
· 월수입(일반화물, 만원)	202	165	△18.1%
· 경유가격(원/ℓ)	376.2	837.5('04.1)	122.6%
· 연간 차량당 물동량(톤)	2,460	1,750	△ 28.9%

※ 경유가는 일반화물차 지출액의 40.9%를 차지(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 불공정 다단계 거래·지입제 등 영세하고, 낙후된
시장구조

- 2~4단계 거래, 일반화물차의 93.5%가 지입차량

◇ 높은 화물차 사고율과 화물집단운송거부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취약

- 사업용 화물차 1만대당 사망사고 18건/년(승용차 3.8건)

2. 종합대책 주요내용

가. 화물운송시장 수급안정 도모

☐ 화물운송업을 「등록제→허가제」로 전환

- '04~'05년간은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화물차량의 공급 초과가 조기 해소되도록 신규허가를 억제

☐ 허가기준 및 영업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

-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수 합병(M&A) 등 지원방안 강구

나. 화물차주의 근로조건 향상

☐ 운송경비 절감을 위한 지원 강화

-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

-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시간대 확대('03.5.21)

- 24:00~06:00→ 22:00~06:00로 2시간 확대

- 대형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04.3.3 시행)

- 4종(10톤~20톤) : 71.0원→ 55.5원/km(△ 22%)

- 5종(20톤이상) : 72.4원→ 65.7원/km(△ 9%)

☐ 적정 운임 형성을 위한 지원강화

- 정부·화주·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를 정기(연2회)적으로 개최 추진
- 전문기관이 특정품목(철강, BCT 등)에 대한 운송원가 등을 조사·발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

☐ 유가보조금, 적재물보험기능 등이 복합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보급 활성화를 추진('04.3.23 도입)

※ 종전에는 유가보조금 수령율이 48%내외였으나, 카드제 도입으로 90%까지 상승 전망(유가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월 10~30만원)

☐ 고속도로 주변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확충('03:6개소→'04:9개소)하고, 부산, 인천, 광양항 등 주요항만에도 화물차 휴게소 설치 추진

☐ 화물차주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화물차주단체」의 건전한 육성 유도

다.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투명화

☐ 다단계거래의 개선 추진

- 다단계거래에 대한 정기특별단속 강화 및 대기업 물류자회사, Paper company,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운송·주선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실시

※ 5월중 관계부처 합동 단속 실시

○ 화물운송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조기 정착 촉진('04.4시행)

※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는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전산망을 통해 화물차주(가맹점)에게 배정하는 제도

○ 화물운송정보망을 활성화하여 직거래를 유도

□ 지입제 폐단 해소를 위한 개별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04.12.31)

○ 운송업체와 차주간 경영위수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04)

○ 운송업체와 차주간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추진('04. 하반기)

□ 실력있는 운송업체가 우대되는 경쟁체제 조성

○ 운송실적, 장비보유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화물차 증차시 인센티브 부여

○ 소비자 피해건수,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우수운송업체 인증제의 본격 시행('05)

□ 중장기적으로 화물운송업의 업종 개선방안을 검토

라.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 화물운송업계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자격제도」 도입('04.7시행)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관련법규, 교통안전 법규 등 소정의 필기시험 및 교육을 이수토록 함

□ 화물공제제도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

- 지부별 독립채산제 → 전국채산제로 전환
- 운영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손해사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여 투명한 경영 유도

□ 「시·도별 공영·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검토

마. 화물운송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 화물운송 시장상황, 차주동향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 교통개발연구원에 「화물운송시장 정보팀」을 설치하고, 운송(주선)업체 및 화물차주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 화물자동차 안전사고의 감소 추진

- 일정규모 이상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기 도입을 연구 용역을 거쳐 검토 추진
- 안전사고가 적은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차 증차시 우대

□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실효성있는 비상수송대책 마련

-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예방, 사업장별 운송료 분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04.3)

- 군 컨테이너차량(128대)에 대한 지역별·차량별 투입계획을 마련하고, 군 컨테이너 운전인력(900명) 상시 확보
- 「집단운송거부 대비 종합대응매뉴얼」을 상시적으로 보완
-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적 위기발생시, 화물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3.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붙임 2

'03년 화물운송개선 11개사항 추진상황

○ 9개사항 완료, 2개사항 추진중

구 분	추진 상황	비 고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22:00~06:00으로 할인시간대 2시간 연장조치('03.5.21) ○ 대형화물차 통행료 인하('04.3.3시행)	건교부 (완 료)
2. 과적단속제도개선	○ 실질적 과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권 행사 방향” 지시('03.5.29)	법무부 (완 료)
3.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대상 근로자 범위에 화물운송 근로자를 포함토록 소득세법시행령 개정('03.7.1)	재경부 (완 료)
4. 화물운송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 수송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화물연대 대표로 구성('03.6.9)	건교부 (완 료)
5. '03.7 경유세인상액 전액보조	○ 교통세법·지방세법시행령 개정('03.7.1) 하여 경유세 인상액 전액 보조	재경부 행자부 (완 료)
6.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개선	○ '04년까지 화물차휴게소 확충('02 : 4개소→'04: 9개소)	건교부 (완료)
7. 노동권 보장문제 협의	○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설치('03.9.3) -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중	노동부 (추진중)
8. 다단계 운송주선 구조개선	○ 다단계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 실시 ○ 운송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04.4)	건교부 공정위 (완료)
9. 지입제 폐지	○ 지입제 폐해방지와 차량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개별허가제 시행('04.1.20 법률 공포) * '04.12.31부터 시행	건교부 (완료)
10. 화물차주의 산재 보험 가입	○ 산재보험법에 가입근거 마련('04.1.29 법률공포) - 같은법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화물차주를 임의 가입대상으로 규정)	노동부 (추진중)
11. 화물연대-운수단체간 중앙교섭지원	○ 일반화물, 컨테이너, 시멘트(BCT) 분야 업태별 운송료협상 지원 * 자율교섭 원칙	건교부 산자부 등 (완 료)